



Kim Kim & Co., CPAs, P.C.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306 Fifth Avenue, 7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268-8940 ♦ Fax: (212) 268-7374
www.KimCPA.com

Members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New York State Society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New Jersey Society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2024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서 필요한 자료>

2024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를 2025년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당되는 자료들을 우편, 팩스, 혹은 ClientSupport@KimCPA.com로 보내 주십시오. **모든 고객의 세금보고를 단기간 내에 준비하며 방대한 양의 세금 자료들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자료를 여러번에 걸쳐 보내주시면 세금 보고 작성이 지체될 뿐만아니라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꼭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주십시오.**

1. 뉴욕주에 세금보고를 하시는 경우 ① 운전 면허증 또는 신분증 번호 ② 발급한 주정부 ③ 발급일 ④ 만기일 ⑤ 서류 번호를 (NYS 발급 면허 및 신분증인 경우) 알려주십시오.
2. 2024년동안 Marketplace에서 제공되는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저희에게 **Form 1095-A** 서류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의무는 2019년부터 없어졌지만 Massachusetts, New Jersey, Vermont, California, Rhode Island, D.C.에 거주하는 경우 주정부차원에서 건강보험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주에 거주하시는 경우 온가족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혹시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별도로 저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1년간 건강보험이 있었던것으로 세금보고 하겠습니다.)**
3. **작년 세금보고서 내용중 변동사항이나 정정되어야 하는 자료:** 아기 출산, 자녀분의 독립 세금보고등 가족사항 변동, 집주소 변경, 은행구좌 변경, 이메일 주소 변경등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통지가 없으면, 작년에 사용된 자료들로 세금보고가 작성됩니다.
4. **각종 세금보고에 관련된 서류들:** W-2, 1099-NEC, 1099-INT (이자소득 관련 양식), **1099-G (실직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1098 (집모기지 이자와 부동산세 관련 양식), 1098-T (학자금 관련 양식), 1098-E (학자금 융자이자 관련 양식), 1095-A/B/C (건강보험 관계양식) 등의 세금보고서 사용하라고 받으신 서류들. 혹시 2024년 동안 집을 구입했거나 매각한 경우 클로징서류.
5. **각종 공제/크레딧 사항들:** 각종 IRA 적립금, 교회 및 자선 헌금, 의료 비용, 2024년 총 집임대 비용.
6. **2024년 소득세를 예납하신 경우,** 납부하신 총액수, 수취인, 납부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7. **개인 은행구좌 자료:** 세금 환불액, 지불하실 세금 및 저희 수수료가 고객의 은행구좌에 자동 입금/인출되기를 원하시면 수표의 copy를 보내주시거나 은행이름, 은행 Routing 번호, 구좌번호, 구좌 Type을 알려주십시오.
8. **해외 금융자산 보고 (FBAR, FATCA)** 미국 내국인 소득세 (1040양식) 보고하는 분들로서 2024년동안 합하여 최고 \$10,000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가 있으셨으면 2025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셔야 되며, 해외 금융계좌나 기타 자산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타 보고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4월 15일 마감일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3월 15일까지 저희에게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모든 분들의 보고서가 짧은 기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자료를 받는 순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자료를 3월 15일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하게됩니다. 좀더 자세한 세금보고 안내문은 저희 웹사이트 <http://www.KimCPA.com/support.html> 를 참조하십시오.

김 원교, 김 경주 합동 공인회계사 드림

새로 제정된 조세 개혁법에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관한 특별 참고 사항: 1986 년 조세 개혁법 이후 가장 포괄적인 조세법이 2017 년 12 월 22 일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대체적으로 세율이 낮아졌으나, 그동안 한사람당 주어지던 인적공제가 없어졌으며, 기본 공제액이 대략 두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기본 공제액 또는 항목별 공제액 중 큰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많은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작성하지 않게될것 같습니다. 또한, 2019 년부터 "Obamacare"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들어야 했던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 2024년도 개인 소득세보고 >

2024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를 2025년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인 소득세 관계 서류들 (W-2 Form, 은행이자 서류 등)이 보통 2025년 1월 31일까지 납세자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받으신 근로 소득관계 W-2, 1099-NEC나, 혹은 은행들로부터 받으신 이자소득 관계 1099-INT 나 집 모게지 이자정산서인 1098등을 앞장에서 말씀드린 기본 자료들과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Earned Income Credit** 은 W-2 나 1099-NEC Form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와 무관한 것으로, 연중에 소득세를 안 내신 분들도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정부로부터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 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 보고를 하므로 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인이 없는 경우라 하여도,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적은 성인인 경우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부양인으로 인정을 받자면, 친자녀, 양자, 양녀, 손주, 의붓자식, 조카, 형제, 자매, Foster Child가 19세 미만 (학생인 경우는 24세미만, 불구인 경우는 나이 제한 없음) 이며, 6개월 이상 한집에 거주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양인의 이름, 출생일, **Social Security Number**, 관계 (친자녀, 양녀, 양자, 손주등), 2024 동안 동거한 개월 수를 알려 주십시오. 단,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등의 투자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Earned Income Credit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Child Tax Credit.** 17세미만의 미국 시민권, 영주권 소유의 부양인이 있는 납세자들은 부양인 1인당 \$2,000 세금 크레딧이 허락됩니다. (소셜 시큐리티번호, 생년월일이 필요)
- 3. Education Credit or Deductions.** 고등학교 이후의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학비가 있으셨으면 American Opportunity 나 Lifetime Learning credit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Tuition Statement인 1098-T 와 학생의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2024 지출된 총학비 및 학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4. 학비 대부금에 대한 이자비용** 중 최고 \$2,500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본 이자비용 공제도 고소득 납세자인 경우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기관에서 받은 1098-E 필요)
- 5. 교육자 비용.** 교육자들은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 교감/장 및 각종 학교 보조) 항목별 공제를 안 하시는 경우라도 최고 \$300까지 자비로 지불한 교육비용과 (책, 교실부품, 컴퓨터 등)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물품비용을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 6. IRA (개인 은퇴연금 계좌)** - 2024년 IRA 관계 적립을 2025년 4월 15일까지 하실 수 있으며,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최고 \$7,000까지 (50세 이상일 경우 \$8,000) 소득세 계산상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보고시 최고 \$14,000까지 (50세 이상일 경우 \$16,00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미 IRA공좌에 적립하신 분, 혹은 2025년 4월 15일까지 적립하실 분은 알려 주십시오. (Roth IRA는 소득세 계산상 공제혜택 안됨. 하지만 59 ½세 넘어서 찾을 당시 세금면제.)
- 7. 은퇴계좌 적립금 크레딧.** 각종 은퇴구좌 적립금 (Roth IRA 포함) 중 최고 \$1,000까지(부부 합동보고시 \$2,000) 크레딧이 허락됩니다. 단 본 크레딧은 총수입 (AGI)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8. **Education IRA.**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ESA)라고 불리워지며 자녀의 학비저축 등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한 자녀 당 \$2,000의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상 공제는 안됩니다. 단, 원금 위에 생기는 투자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9. 2024중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단독주택, 코옵, 콘도미니움) 클로징서류와 은행에서 보내오는 모기지이자와 부동산세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024년중 집을 매각하신 경우 모든 관련 서류 (구입시 클로징서류와 매각시의 클로징서류, 집의 증축 비용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세법에 의하면, 공동보고 하는 기혼납세자는 양도소득의 \$500,000까지 세금 면제받으며 미혼 납세자의 경우 양도소득의 \$250,000까지 세금 면제 받게되며 됩니다. 이러한 세금면제를 받자면 납세자가 매각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 기간동안 최소 2년간 소유하였고, 최소 2년간 거주하였어야 됩니다. 또한, 세금면제혜택을 사용한 후 2년후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2024년 소득세를 예납**하신 경우, 납부하신 총액수, 수취인 (IRS, NY State, NY City, NJ State), 날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은** 2024년 사업내용을 다음 항목별로 총계 수치를 알려 주십시오.

- ① 총수입/매상 (Gross Receipts of Sales)
- ② 재고 - 1/1/2024 와 12/31/2024 당시 재고 액
- ③ 총 물건구매액 (Total Purchase)
- ④ 사업 관계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비, 자동차 비용, 보험료, 이자 비용, 임대료, 사무실 비용, 수리비/유지비, Supplies 비용, 변호사/회계사 비용, 여행비용, 접대비, 전화비, 전기/가스비등
- ⑤ 2024 중 사업체를 구입하신 경우 클로징서류와 리즈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2024 중 사업체를 매각하신 경우 사업체 구입시와 매각시 클로징서류가 필요합니다.
- ⑥ 자영사업자가 지불하신 건강보험료의 100%를 항목별 공제전 소득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12. **자녀 양육비** - 2024년중 자녀 양육비용이 (Babysitter/Nursery) 있으셨으면 다음 자료를 주십시오. ① Babysitter/Nursery 이름 ② Babysitter Social Security Number/Nursery Federal ID 번호 ③ 주소 ④ 금액단 자녀의 보호자가 일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어야 해당이 되므로,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Babysitter인 경우에는 고객께서 고용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정식으로 2024년도 중에 Payroll Processing을 하시고, 고용주로서의 세무 보고를 2024년도에 하셨어야 합니다.

13. 기타 항목별 공제 사항

연방 소득세 계산시, 항목별 공제액과 기본 공제액중 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액은 모든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부부 공동 보고시와 미망인 = \$29,200, 독신 = \$14,600, 세대주 = \$21,900, 부부 개별 보고시 = \$14,60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기본 공제액 또는 항목별 공제액 중 큰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 ① 주/시 소득세 원천 징수액, 부동산세 (새로 개정된 조세법에 (TCJA) 인하여 2019년 납세기간부터는 총공제액수가 부부 공동 보고시 \$10,000로 제한됩니다.)
- ② 개인주거용 주택의 집 모기지 이자액 (단 두주택에 한하여). 2017년 12월 15일이나 그이전에 용자된 모기지 이자와 Home Equity Loan의 이자는 부부 공동 보고시 모기지 총 대부금액 \$1,000,000, Home Equity Loan은 \$100,000에대한 이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15일이후에 모기지를 용자한 경우 부부 공동 보고시 총 대부금액 \$750,000에대한 이자만 (부부 개별 보고시 \$375,000)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선 헌금 (예: 교회 헌금). 자선 헌금금액이 건당 \$250 이상 되는 경우 자선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수증"은 세금 보고일 이나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예, 4/15/2025) 받아 두셔야 됩니다. 헌금영수증 서류를 받으시면 헌금의 보상으로 돌려 받은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한 문구가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미 연방 세법 법원에서 보상물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헌금전액을 공제 못하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 ④ 상해/도난으로 인한 손실. 새로 개정된 조세법 (TCJA)에 따르면, 상해/도난으로 인한 손실 공제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앙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소득의 10% 이상 되는 금액의 손실만 공제 가능합니다.
- ⑤ 새로 개정된 조세법은 (TCJA) 직장 관계로 지출한 비용 중, 고용주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금액, 투자 관련 비용, 세금보고 작성 비용, 유니폼, 노동 조합 회비, home office 공제액 및 안전 금고 비용등의 기타 공제액을 완전히 제거하여 더 이상 공제되지 않게 폐지하였습니다.
- ⑥ 새로 개정된 조세법은 (TCJA) 모든 세납자들이 직장 이전 관계로 지출한 이사비용 공제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단 미국 군인은 제외)
- ⑦ 의료비용 (의료 보험료, 의사, 안경, 약값 등)중 총수입 (Adjusted Gross Income)의 7.5% 이상의 금액. 【예】 총수입 = \$10,000, 총 의료비용 = \$1,200 일 경우의 의료 공제액은?

$$\$1,200 - (\$10,000 \times 7.5\%) = \$1,200 - \$750 = \$450$$
 그러므로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는 \$450 이 됩니다.

14. 2025년도 세금예납. 2025년도 소득세를 예납하고자 하시면, 저희에게 예납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주십시오.

- ✉ 4월 15일이 마감이오니, 늦어도 3월 15일까지 모든 자료를 저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는 순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므로, 3월 15일까지 저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보고 연기 신청을 하게됩니다.
- ✉ 각 정부 기관에서 세무 관계로 연락을 받으시면, 즉시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IRS가 보내는 편지중 IRS측의 실수이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편지들이 있으므로, 직접 처리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의뢰하여 주십시오.
- ✉ 외국에 있는 은행/투자 계좌에 2024년 중에 \$10,000이상의 잔고가 있었던 분들은 2025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나 기타 자산들이 있으신분들은 기타 보고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 원교, 김 경주 합동 공인회계사 드림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 드리는 자료 외에도 추가 정보와 자료를 저희 웹사이트 <http://www.KimCPA.com/support.html>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e-mail) 사용하시는 고객은 저희에게 고객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영어나 한글을 사용하시어 ClientSupport@KimCPA.com 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